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목 차>

1. 달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기준 규정 p.1
2. 리프트 종류에 산업용 리프트 규정 p.15
3. 유해물질 취급 관련 서류 내용 및 보존의무 정비 p.26
4.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시행 기준 개정 p.33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의무
p.49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작성 자	이름	* 별지 참조
	총괄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직급	* 별지 참조
	국장 ^代	김규석		연락처	* 별지 참조
	과장	손필훈		이메일	* 별지 참조

※ 별 지 : 규제사무별 작성자

1. 달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기준 규정 <표준형>

이름	윤병민, 김병석
직급	5급, 6급
연락처	044-202-8936, 8939
이메일	rollingpanda@korea.kr, kbs0818@korea.kr

2. 리프트 종류에 산업용 리프트 규정 <표준형>

이름	신정욱, 서재민
직급	5.급, 전문위원
연락처	044-202-8853, 8857
이메일	forhide@korea.kr, jmseo@korea.kr

3. 유해물질 취급 관련 서류 내용 및 보존의무 정비 <표준형>

이름	김원, 최성필
직급	5급, 6급
연락처	044-202-8872, 8874
이메일	kw0125@korea.kr, ehschoi@korea.kr

4.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시행 기준 개정 <표준형>

이름	황규석, 최석원
직급	5급, 7급
연락처	044-202-8871, 8876
이메일	gyuseok.hwang@korea.kr, gkxoa9711@korea.kr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의무 <표준형>

이름	원치욱, 최선미
직급	5급, 전문위원
연락처	044-202-8922, 8928
이메일	chiuk91@korea.kr, mimi17@korea.kr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달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기준 규정		
	2.규제조문	제63조 제2항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8.19 ~ 2021.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건설현장에서 벽면의 도장, 견출(면정리), 미장 및 코킹 등의 작업 시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사용한 작업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 건축물 상부에 섬유로프를 체결하고, 섬유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한 뒤 여기에 작업자가 작업대에 앉아 하강하면서 작업하는 형태의 달비계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따른 달비계 구조는 주로 곤돌라*형 달비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고 * 달기 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부속된 기계 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강선에 의하여 달기 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를 말함 -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규정은 불분명하여 이를 설치·사용하는 사업주가 이 규정에 맞게 설치·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사업주에게 혼선 야기) ○ 이에 달비계 형태(곤돌라형 또는 작업의자형)에 맞게 안전조치 규정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 ☐ 달비계를 사용한 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관리하여야 하나, ○ 현행 규정*에서 안전대 및 구명줄 설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착용 관리의무에 대한 보완 필요 * 안전보건규칙 제63조 제10호 :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할 것		
	7.규제내용	☐ 달비계 종류별 안전조치 구분 및 안전조치 내용 추가 ○ 달비계 종류별(곤돌라형 달비계 또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 달비계 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의무 명시 ○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시작 전 확인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8. 피규제 집단 및	건설업체 관계자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건설업체 관계자(석공사, 외벽도색 공사 등)	파악 불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조치를 구분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곤돌라형 달비계 기준과의 혼선 해소하고,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를 통해 추락사고 예방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미적용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3조(달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u>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제63조(달비계의 구조) ① 사업주는 <u>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u>	3. (삭제)
가. <u>꼬임이 끊어진 것</u>	가. (삭제)
나. <u>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u>	나. (삭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u>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 또는 달기 섬유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u>	5. ----- ----, <u>달기 강대</u> ----- ----- ----- ----- -----
6.~9. (생략)	6.~9. (현행과 같음)
10. <u>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u>	10. ----- ----- <u>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u> ----- ----- -----
<u><신설></u>	② 사업주는 <u>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1. <u>작업대는 작업발판과 보강재 등으로 구성된 튼튼한 구조로 할 것</u>
	2. <u>작업대는 로프에 의해 4개 모서리를 매달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할 것</u>

현 행	개 정 안
	3.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또는 건축물의 콘크리트 및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4. 작업용 섬유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대가 스스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
	5. 작업용 섬유로프를 결속한 고정점에는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 다른 사람이 로프를 풀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
	6.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은 각각 별도의 고정점에 묶을 것
	7. 작업용 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은 작업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할 것
	8. 작업용 로프나 구명줄이 건물 또는 구조물의 단부, 날카로운 물체 등에 걸쳐져 있어 절단 또는 마모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프 보호조치를 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달비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가. 꼬임이 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다. 2개 이상을 연결한 것
	라.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현 행	개 정 안
	10.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할 것 11.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 가. 로프, 로프의 고정점, 작업대, 고리걸이용 철구 및 안전대 등의 결손 여부 나. 작업용 로프 및 안전대 부착설비용 로프가 고정점에 풀리지 않는 매듭방법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다. 근로자가 작업대에 탑승하기 전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용 로프에 체결하였는지 여부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건설현장에서 벽면의 도장, 건출(면정리), 미장 및 코킹 등의 작업 시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사용한 작업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 건축물 상부에 섬유로프를 체결하고, 섬유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한 뒤 여기에 작업자가 작업대에 앉아 하강하면서 작업하는 형태의 달비계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따른 달비계 구조는 주로 **곤돌라*형 달비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고

* 달기 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부속된 기계 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강선에 의하여 달기 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를 말함

-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규정은 불분명하여 이를 설치·사용하는 사업주가 이 규정에 맞게 설치·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사업주에게 혼선 야기)

○ 이에 **달비계 형태**(곤돌라형 또는 작업의자형)에 맞게 안전조치 규정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

□ 달비계를 사용한 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관리하여야 하나,

○ 현행 규정*에서 안전대 및 구명줄 설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착용 관리의무에 대한 보완 필요

* 안전보건규칙 제63조 제10호 :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할 것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현행 규정에 따른 달비계 구조는 주로 곤돌라형

		달비계와 관련하여 규정
규제대안1	대안명	개정안 같이 변경
	내용	곤돌라형, 작업의자형 달비계 등 달비계 형태에 맞게 안전조치 규정을 명확히 구분
규제대안2	대안명	달비계 작업을 금지
	내용	달비계 작업을 금지하고 고소작업대, 강관비계 등 사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해당없음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여 이를 설치사용하는 사업주가 이 규정에 맞게 설치사용하기 어려움
규제대안1	달비계 작업 시 사업주의 혼선을 제거하여 보호구 지급 및 착용률을 올려 추락사고 예방	해당없음
규제대안2	안전성 확보	달비계 작업에 비해 사업주에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순응도가 떨어짐(예시: 고층빌딩 유리창 청소 시에도 비계조립 필요, 혹은 고소작업대 사용시 청소기간 증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달비계 작업업체관계자	연구용역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연구용역명: 달비계 작업의 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2019, 안전보건공단))	규정 개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조치를 구분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곤돌라형 달비계 기준과의 혼선 해소(피규제자)하고,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를 통해 추락사고 예방에 기여

3. 규제목표

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조치를 구분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곤돌라형 달

비제 기준과의 혼선 해소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달비제 관련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피규제자에게 곤돌라형 vs 작업의자형 달비제 간 서로 다른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발생하는 피규제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책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	--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계속 유지해야 하는 규제에 해당하여 일몰설정 대상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	------	------------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OSHA, HSE 등에서 달비계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현행 유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현행 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재도 피규제자는 작업 유형에 따라 곤돌라형,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구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을 통해 지도점검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비용 발생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2019년 달비계 작업의 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 제도 개선 기준 모색

2. 향후 평가계획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혹은 안전공단 직원 현장 점검 시 확인하겠음

3. 종합결론

위와 같이 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조치를 곤돌라형 안전조치와 명확히 구분하여 피규제자가 안전조치를 하는데 혼선을 해소하고,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 추락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현행 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현행 유지>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비용

(정성)세분류	건설업체(석공사, 외벽공사 업체 등)
활동제목	달비계 규정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
비용항목	해당없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현재 석공사 업체 등이 작업 여건에 따라 곤돌라형 달비계 VS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구분 사용하고 있고 단순히 안전조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리프트 종류에 산업용 리프트 규정		
	2.규제조문	제132조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8.19 ~ 2021.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16.12월, 정부합동 「승강설비 안전관리 개선대책」은 리프트를 행정안전부(「승강기 안전관리법」) 소관 승강기로 포함하는 개선 방안* 마련 * 승강기 관리체계(승강기안전공단) 일원화 등 수직승강설비 안전성 강화 ○ 리프트를 승강기로 포함하는 후속조치로 '일반작업용 리프트' 정의를 삭제*(19.4월, 안전보건규칙 제132조)하였으나, * 설·해체가 빈번한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종전과 같이 고용부에서 지속 관리 - 승강기 편입 시 제조단가 상승 및 제작·설치 어려움 등 관련 업계 고충 제기*에 따라 국회에서 해당 내용 복원을 요구 * 국회(송옥주·이언주 의원)자료 제출 및 유관 부처 간담회('19.6.19., 7.23., 8.21.) ↳ 일반작업용 리프트는 고용부 소관 설비로 관리하도록 조정 ○ 이에,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리프트의 종류로 다시 규정하여 해당 리프트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일반작업용 리프트' 용어 삭제로 리프트 사용 사업장의 안전 조치(작업 전 점검 규칙 제35조, 방호장치 조정 제134조 등) 준수 의무 또한 없어짐 - 다만, '일반작업용 리프트'는 안전인증·검사 제도에서 분류하는 리프트 종류와 일치하기 위해 '산업용 리프트'로 용어 변경* *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건설용 리프트'로 변경		
	7.규제내용	□ '산업용 리프트'를 리프트의 종류로 정의하여, 산업용 리프트 사용 시 해당 안전기준 준수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리프트 사용 사업장(약 7,000 여개소)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리프트 사용 사업장	약 7,000여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리프트의 종류로 다시 규정하여 해당 리프트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일반작업용 리프트' 용어 삭제로 리프트 사용 사업장의 안전조치(작업 전 점검 규칙 제35조, 방호장치 조정 제134조 등) 준수 의무 또한 없어짐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타	12.일물설정 여부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2조(양중기)	제132조(양중기)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가. <u>건설작업용 리프트</u> : (생 략)	가. <u>건설용 리프트</u> :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나. 산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16.12월, 정부합동 「승강설비 안전관리 개선대책」은 리프트를 행정안전부(「승강기 안전관리법」) 소관 승강기로 포함하는 개선방안* 마련

* 승강기 관리체계(승강기안전공단) 일원화 등 수직승강설비 안전성 강화

○ 리프트를 승강기로 포함하는 후속조치로 '일반작업용 리프트' 정의를 삭제*(19.4월, 안전보건규칙 제132조)하였으나,

* 설·해체가 빈번한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종전과 같이 고용부에서 지속 관리

- 승강기 편입 시 제조단가 상승 및 제작·설치 어려움 등 관련 업계 고충 제기*에 따라 국회에서 해당 내용 복원을 요구

* 국회(송옥주·이언주 의원)자료 제출 및 유관 부처 간담회('19.6.19., 7.23., 8.21.)

↳ 일반작업용 리프트는 고용부 소관 설비로 관리하도록 조정

○ 이에,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리프트의 종류로 다시 규정하여 해당 리프트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일반작업용 리프트' 용어 삭제로 리프트 사용 사업장의 안전조치(작업 전 점검 규칙 제35조, 방호장치 조정 제134조 등) 준수 의무 또한 없어짐

- 다만, '일반작업용 리프트'는 안전인증·검사 제도에서 분류하는 리프트 종류와 일치하기 위해 '산업용 리프트'로 용어 변경*

*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건설용 리프트'로 변경

< 리프트 관련 안전보건규칙 규정 >

<용어의 정리 - 리프트 종류.>		일반작업용리프트에 적용되지 않는 <안전기준>
리프트 (제132조 제1항제3호)	건설작업용 리프트	①작업 전 점검(제35조), ②방호장치 조정(제134조), ③조립 등 작업 시 안전조치(제151조~제159조) 등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제151조~159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일반작업용 리프트<삭제>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리프트 용어 복원
	내용	작업 전 점검 등 안전기준 준수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	안전기준 준수로 산업재해 예방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리 업무 철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리프트 제조업체 등 관련업체 간담회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대한 복원 관련('19.6.19., 7.23., 8.21.)	수용 입장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최근 5년간('16~'20) 리프트 사고사망자는 총 30명으로, 끼임·추락 등 재래형 재해가 대부분이며,
 -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종전 삭제된 리프트 용어를 신설하여 사업장에서 안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3. 규제목표

- 개정안과 같이 리프트 용어를 신설하여 리프트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리프트 사고예방을 위해 종전 삭제된 용어를 복원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규제 목적과 수단이 타당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리프트 안전기준 적용은 지속·유지가 필요하므로 일몰설정 제외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	중전 삭제된 용어를 복원(신설)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사항에 미해당
유연한 분류 체계	-	리프트의 종류 중 중전(일반작업용 리프트)만 해당되며, 해당 용어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용어(산업용 리프트)와 일치

네거티브 리스트	—	신설되는 산업용 리프트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포지티브 방식
사후 평가관리	—	해당 없음
규제 샌드박스	—	리프트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용어 신설로 리프트 작업 전 위험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규제 면제 등 미해당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 없음

○ 타법사례

- 해당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리프트 용어 복원>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리프트 용어 복원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리프트는 설치단계와 사용단계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고, 사업장내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 주체가 작업 전 안전성 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피규제자의 준수가 가능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종전 삭제된 용어를 복원(신설)하는 것으로 별도 집행은 불필요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리프트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용어 복원 등에 대해 관련 업계 ('19.6월, 7월, 8월) 등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함

2. 향후 평가계획

- 해당 없음

3. 종합결론

- 리프트는 떨어짐, 끼임 등 재래형 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리프트 사용시 작업 전 점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용어 신설은 반드시 필요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리프트 용어 복원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리프트 용어 복원>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리프트 사용 사업장								
활동제목	리프트 용어 신설로 안전기준 적용								
비용항목	안전기준 적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리프트 사용 사업장은 6,977개소에서 9,348대를 사용중 - 해당 리프트는 설치단계에서 산안법 제84조(안전인증)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고 사용단계에서 제93조(안전검사)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고 있음 - 따라서, 종전 삭제된 리프트 용어를 복원한다고 하여 별도 규제 비용은 발생 하지 않음 <table border="1"> <thead> <tr> <th>용어 신설로 적용되는 안전기준</th><th>규제비용 발생 여부</th></tr> </thead> <tbody> <tr> <td>작업 전 점검(제35조)</td><td>X</td></tr> <tr> <td>방호장치 조정(제134조)</td><td>(방호장치 설치 등 인증검사 시 확인)</td></tr> <tr> <td>조립 등 안전조치 (제151조~제156조)</td><td>X (사람의 탑승 제한, 관계 근로자외 임의 조작 등 관리적 기능에 관한 사항)</td></tr> </tbody> </table>	용어 신설로 적용되는 안전기준	규제비용 발생 여부	작업 전 점검(제35조)	X	방호장치 조정(제134조)	(방호장치 설치 등 인증검사 시 확인)	조립 등 안전조치 (제151조~제156조)	X (사람의 탑승 제한, 관계 근로자외 임의 조작 등 관리적 기능에 관한 사항)
용어 신설로 적용되는 안전기준	규제비용 발생 여부								
작업 전 점검(제35조)	X								
방호장치 조정(제134조)	(방호장치 설치 등 인증검사 시 확인)								
조립 등 안전조치 (제151조~제156조)	X (사람의 탑승 제한, 관계 근로자외 임의 조작 등 관리적 기능에 관한 사항)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유해물질 취급 관련 서류 내용 및 보존의무 정비									
	2.규제조문	제439조, 제468조, 제509조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08.19 ~ 2021.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이하 “중대유해물질”로 통칭)은 중독성질환 및 직업성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록 관리가 중요한 유해물질로서, - 현재 규정에서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물질의 명칭, 제조·사용량,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물질별 기재내용도 상이하고, 취급 노동자에 대한 정보도 부재하여 이에 대한 통일적인 정비*가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 물질에 대한 기록 내용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을 권고('18.9월) - 한편,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안전보건규칙 제439조)의 경우, 현재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의 규정을 기록·보존 의무로 해석하여 왔는데 이를 개정하여 보존 의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									
	7.규제내용	◎ 중대유해물질 취급시 기록·보존해야하는 서류의 내용에 작업자명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이고 통일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정하고, 해당 서류의 보존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개정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사업주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 rowspan="2">피규제자</td><td>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사업주</td><td>총 18,015개소 - 금지물질 36개소, 허가물질 73개소, 특별관리물질 17,906개소</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사업주	총 18,015개소 - 금지물질 36개소, 허가물질 73개소, 특별관리물질 17,906개소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사업주	총 18,015개소 - 금지물질 36개소, 허가물질 73개소, 특별관리물질 17,906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중대유해물질 취급 기록을 구체적이고 통일되게 기재·보존토록 함으로써 취급기록 관리 내실화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독성질환 및 직업성암에 대한 추적관리 및 산재보상이 용이해져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기존 규제내용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불가하여 비용발생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명, 보호구 및 주요 사건정보를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중독성질환, 직업성암 등에 대한 건강추적관리 및 재해보상시 활용 가능	-
		주요내용	○규제대상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은 중독성질환이나 직업성암과 관련된 유해물질로서,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468조, 제509조에 이미 해당 규제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기록·보존토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정보내용이 부족하여 중독성질환이나 직업성암 발생 시 유용한 노출정보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 - 이에, 기존 취급기록에 근로자명, 착용보호구, 누출·오염·흡입 등의 사건여부 등을 추가로 기재토록 함으로써 향후 실질적인 노출정보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편, 2014년에 제정하여 그간 사업장에 배포, 지도해 온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H-147-2014)'에 작업자명, 사건발생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 서식을 제공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에 따른 혼란이나 부담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판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물설정 여부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사업주는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39조(노출기록의 작성 및 보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고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자명 2. 유해물질의 명칭 3. 취급량(사용량 또는 제조량 등) 4. 작업내용 5.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건이 있었던 경우 그 내용 및 조치한 내용
제468조(기록의 보존)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제조량 또는 사용량, 작업내용, 새는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68조(노출기록의 작성 및 보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고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자명 2. 유해물질의 명칭 3. 취급량(사용량 또는 제조량) 4. 작업내용 5.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건이 있었던 경우 그 내용 및 조치한 내용
제509조(기록의 보존)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의 이름, 사용량, 시험·연구내용, 새는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509조(노출기록의 작성 및 보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고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자명 2. 유해물질의 명칭 3. 취급량(사용량 또는 제조량) 4. 작업내용(시험·연구내용) 5.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건이 있었던 경우 그 내용 및 조치한 내용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이하 “중대유해물질”로 통칭)은 중독성질환 및 직업성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록 관리가 중요한 유해물질로서,
 - 현재 규정에서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물질의 명칭, 제조·사용량,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물질별 기재내용도 상이하고, 취급 노동자에 대한 정보도 부재하여 이에 대한 통일적인 정비*가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 물질에 대한 기록 내용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을 권고('18.9월)
- 한편,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안전보건규칙 제439조)의 경우, 현재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의 규정을 기록·보존 의무로 해석하여 왔는데 이를 개정하여 보존 의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비통일성)
	내용	각 유해물질 규정에 따라 기록·관리
규제대안1	대안명	취급기록을 통일적으로 규정
	내용	각 유해물질 취급기록 정보를 통일적으로 규정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기존과 변화없음	규정마다 기록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혼선발생 및 실제 중독성질환이나 직업성 암 발생 시 활용도 한계
규제대안1	유해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내용 보강으로 향후 직업성암 발생시 활용도 증대	사업장에 따라서는 일부 서식변경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	※ 추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468조, 제509조에 이미 해당 규제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기록 보존토록한 규정이 있으나 정보내용이 부족하여 중독성질환이나 직업성암 발생 시 유용한 노출정보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
- 따라서, 근로자명, 착용보호구, 누출·오염·흡입 등의 사건여부 등 일부 내용을 보강하여 작성토록 함으로써 노출정보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에 따라 규제대안 1을 선택

3. 규제목표

- 중대유해물질 취급 기록을 구체적이고 통일되게 기재·보존토록 함으로써 취급기록 관리 내실화 및 산재보상 활용도 제고
-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독성질환에 대한 관리강화가 요구되고 있고, 직업성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 유해물질에 대한 취급기록은 건강 추적관리 측면 뿐만 아니라 산재보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중독성질환 및 직업성암과 같은 건강장해는 단기간 내에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노출 후 장기간 경과 후 발현될 가능성이 크므로, 유해물질 취급 상황을 명확히 기록·보존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장해 추적·관리 및 산재보상에 있어서도 중요
- 이에, 기존 기록해야 할 사항에 취급 근로자명, 유해물질 명칭,

취급량, 작업내용, 보호구, 누출·오염·흡입 등의 사건에 관한 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를 추가하여 기록·보존토록 하는 것으로

- 기존에 안전보건기준 규칙 제439조, 제468조, 제509조에 따라 작성 중인 취급기록 사항에 일부 사항만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실질적 부담은 없을 뿐 아니라
- 2014년에 제정하여 특별관리물질 취급사업장에 배포·지도해온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H-147-2014)'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내용임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에 따른 혼란이나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의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 규칙' 제38조의4에 따르면 특정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장에 상시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①근로자명, ②작업개요 및 장업종사 기간, ③해당 물질에 의하여 현저하게 오염이 있었던 경우 그 개요 및 응급조치 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규정

* 주로 발암성물질들로 구성된 물질로, 우리나라의 특별관리물질, 허가물질과 유사

○ 타법사례

*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취급기록을 통일적으로 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취급기록을 통일적으로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행 규정에도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또는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일지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들 유해물질에 대한 기록 사항을 통일적으로 정비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규제자인 사업주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므로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방노동고용관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지도·감독시 해당 유해물질 취급 또는 사용·제조 사업장의 기록·보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행정적으로 충분히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 제도의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은 충분히 가능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 물질에 대한 기록 내용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18.9월)
- 그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추진해온 취급 기록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 화학물질 노출 및 취급기록의 보존과 근로자 접근권 연구(2019, 김승원)
▲ 국내외 생식독성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 규제관리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연계

방안 연구(2017, 최상준)

▲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안전보건기준 연구(2012, 최상준)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동 유해물질 취급 또는 사용·제조 사업장 감독 시 개정내용에 따른 노출기록 작성 및 보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

3. 종합결론

- 중독성질환이나 직업성암은 화학물질 노출 후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급기록은 건강에 대한 추적관리 측면이나 산재보상 측면에서 매우 중요
- 동 규제를 통해 취급기록이 보장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독성질환이나 직업성암에 대한 추적관리 및 산재보상이 용이해져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취급기록을 통일적으로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규제대상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은 중독성 질환이나 직업성암과 관련된 유해물질로서,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468조, 제509조에 이미 해당 규제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기록·보존토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정보내용이 부족하여 중독성질환이나 직업성암 발생 시 유용한 노출정보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 - 이에, 기존 취급기록에 근로자명, 착용보호구, 누출·오염·흡입 등의 사건여부 등을 추가로 기재토록 함으로써 향후 실질적인 노출정보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편, 2014년에 제정하여 그간 사업장에 배포, 지도해 온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H-147-2014)'에 작업자명, 사건발생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 서식을 제공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에 따른 혼란이나 부담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판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취급기록을 통일적으로 규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 취급 사업주
활동제목	취급기록의 작성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18,015개소(특별관리물질 17,906개소, 허가대상유해물질 73개소, 금지유해물질 36개소)(-)
근거설명	○ 동 규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제468조·제509조에 따라 이미 규정된 취급일지의 기록·보존과 관련하여 - 기존 기록내용에 일부 내용을 보강하는 것으로 신설규정은 아니며 - 이번에 추가되는 내용도 그간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가이드 성격, 2014년 제정)에 포함하여 사업장을 지도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성격이 아니어서 실질적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금지물질 취급 근로자
활동제목	취급기록의 작성
편익항목	직업성암에 대한 추적관리 및 산재보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중독성질환이나 직업성암은 화학물질 노출 후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취급 기록은 건강 추적관리 및 산재보상 측면에서 매우 중요 - 동 규제를 통해 취급기록이 보강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독성질환이나 직업성암에 대한 추적관리 및 산재보상이 용이해져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의무											
	2.규제조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안 제672조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8.19 ~ 2021.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시(현재 입법 예고 중),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확대된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에 대해 사업주가 해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마련할 필요											
	7.규제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사업주가 해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내용을 정함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td><td>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한 사업주</td></tr><tr><td>이해관계자</td><td>특수형태근로종사자</td><td>약 27.4만명(추정)</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한 사업주	이해관계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약 27.4만명(추정)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한 사업주											
이해관계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약 27.4만명(추정)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83,777.58	244,337.05	-60,559.47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0	0	0								
		주요내용	해당 규제에 따른 비용은 사업장별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수, 사업장별 업무량 및 규제 신설 이전에 이미 이행하고 있었던 안전·보건조치 등을 토대로 산정해야 하지만, 개별적인 파악이 불가하므로 비용산정 곤란 또한, 안전·보건조치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얻게 되는 산업안전 관련 편익도 계량화하기는 어려움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 일 물 설 정 여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183,777.58	0	23,225.59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 중 영 제67조제1호·제3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② ~ ⑥ (생략) <u><신설></u>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 ----- ----- ----- 영 제67조제1호·제3호·제7호·제8호·제10호-- ----- -----.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663조부터 제666조에 따른 조치 2.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 제42조, 제44조, 제86조, 제95조, 제96조, 제147조부터 제150
<u><신설></u>	

현 행	개 정 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와 같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및 필요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시(입법예고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이 포함됨
-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수행 형태 및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해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내용을 규정할 필요

□ 안전조치 주요 내용

○ 방문판매원·방문강사

- (위험요인) 고객 방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서비스하는 자로 사무실에서 전산 작업 후 사무실 외부에서 고객을 응대하여 사무실의 오염물질 및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 가능
- (안전·보건조치) 사무실의 청결관리, 고객응대 매뉴얼 제공·교육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위험요인) 고객을 방문하여 가전제품 이상 유무 점검 및 제품 청소 등을 수행하는 자로써, 먼지, 중량물 취급에 의한 건강장해 노출 가능
- (안전조치) 보호구(방진마스크 등) 지급 등 조치 의무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위험요인) 고객을 방문하여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정수기 등) 등을 배송·설치하고 작동상태 확인하는 자로써, 설치 작업 중 추락, 중량물 취급 시 건강장해 등 노출 가능
- (안전·보건조치) 추락 예방, 중량물 취급 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등

○ 화물차주

- (위험요인) 일반화물, 유해화학물질 등의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써, 화물 상하역 시 화물 낙하 등 사고 발생 가능
- (안전·보건조치) 보호구(안전모 등) 지급, 화물자동차 승강설비 및 로프 사용 기준, 중량물 취급 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등

○ 소프트웨어기술자

- (위험요인)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사무실의 오염물질 및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 있음
- (안전·보건조치) 사무실의 청결관리,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없음
	내용	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규제 신설 외의 대안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 내용
	내용	직종별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규정함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없음	없음
규제대안1	구체적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고 예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보호구 지급 등 관련 비용 일부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전국 가전 통신 서비스노동조합	에어컨 실외기 설치과정 중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추락 방지 조치 필요	<수용>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의 추락 방지 안전조치 마련
전국화물자동차운송 사업연합회	유해·위험물질 작업 시 사고방지를 위해 사업장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작업수행 필요	<기반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서 안전관리자 입회가 필요한 위험물질 작업을 개별적으로 규정 중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종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규제대안1을 선택하였음

3. 규제목표

직종별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취해져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으로써, 직종별 노무제공 형태 및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내용을 정하였으므로 그 수단이 목적에 비례적으로 타당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규제 차등화와 관련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없음

○ 타법사례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없음>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83,777.58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없음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83,777.58		183,777.58
	간접		244,337.05	-244,337.05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183,777.58	244,337.05	-60,559.47
기업순비용		183,777.58	연간균등순비용	23,225.59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고, 이와 동일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예방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이 산업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 부처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 27개 지역본부·지사 보유)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규제집행에 대한 재정적 집행문제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안전·보건조치 방안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특고종사자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연구('20년)

2. 향후 평가계획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피규제자의 규제 수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

3. 종합결론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내용 마련 필요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없음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83,777.58		183,777.58
	간접		244,337.05	-244,337.05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183,777.58	244,337.05	-60,559.47
기업순비용		183,777.58	연간균등순비용	23,225.59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해당 규제에 따른 비용은 사업장별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수, 사업장별 업무량 및 규제 신설 이전에 이미 이행하고 있었던 안전·보건조치 등을 토대로 산정해야 하지만, 개별적인 파악이 불가하므로 비용산정 곤란또한, 안전·보건조치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얻게 되는 산업안전 관련 편익도 계량화하기는 어려움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없음>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의무										
활동제 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의무										
비용항목	설비										
비용	183,777,589,281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방진마스크) [대여제품점검원](1,718 X 500) + [가전제품설치원](46,066 X 500)(859,000+23,033,000) (안전모) [가전제품설치원](46,066 X 5,000) + [화물차주] (63,789 X 5,000)(230,330,000+318,945,000) (안전화) [가전제품설치원](46,066 X 70,000) + [화물차주] (63,789 X 70,000)(3,224,620,000+4,465,230,000) (소프트웨어기술자 휴게시설) 피규제자수 X 휴게시설 없는 비율 X 1개 휴게시설 마련에 소요되는 직간접비용 (2,870*0.18*28,963,566)										
근거설명	○ 비용 추산을 위한 기본전제 - 피규제대상 규모(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 산재보험 적용 현황('20.9월말 기준) > <table><tr><th>구분</th><th>소계</th><th>대여제품 점검원</th><th>가전제품 설치원</th><th>화물차주</th></tr><tr><td>적용자수(명)</td><td>111,573</td><td>1,718</td><td>46,066</td><td>63,789</td></tr></table> ○ 비용 추산을 위한 기본전제 - 시장 평균 보호구 구입 가격 적용 ※ 방진마스크: 450원~500원, 안전모: 3,000원~5,000원, 안전화: 30,000원~70,000원 ● 방진마스크 지급 대상 직종별 종사자수 : 47,784명 ※ 대여제품 점검원: 1,718명 ※ 가전제품 설치원: 46,066명 ● 안전모 지급 대상 직종별 종사자수 : 109,855명 ※ 가전제품 설치원: 46,066명	구분	소계	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적용자수(명)	111,573	1,718	46,066	63,789
구분	소계	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적용자수(명)	111,573	1,718	46,066	63,789							

※ 화물차주: 63,789명

- 안전화 지급 대상 직종별 종사자수 : 109,855명

※ 가전제품 설치원: 46,066명

※ 화물차주: 63,789명

○ 비용 추산을 위한 기본전제

- 피규제대상 규모(소프트웨어기술자 휴게시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소프트웨어기술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움. 다만,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연구*을 통해 IT부분에서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추산은 가능

* [근거]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2019.12.), 88p

- 연구에서 IT부분에서 프리랜서의 수는 2만9천명에서 6만6천명, IT부분 프리랜서의 규모는 최소 10%에서 최대23%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피규제대상자 수를 6만6천명, 규모를 23%로 최대치로 추정함

-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 수 산출이 필요하나 정확한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움

- 다만, IT부분 프리랜서의 규모가 23%이므로 1개의 사업장에서 평균 23명의 IT부분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다고 추정(6만6천명/23)하여 피규제자수를 2870개소로 추정함

※ IT부분 프리랜서의 수(6만6천명)/IT부분 프리랜서의 규모(23)
→ 총 2,870개로 추정(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휴게시설 설치 비용

- 휴게시설이 없는 사업장 비율 : 18%
- 1개 휴게시설 마련에 소요되는 직·간접비용

※ (리모델링+물품소요비) + (관리비용 외) → 17,394,486원
+11,569,080원 → 28,963,566원

* [근거] 정혜선 외,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235p 이하 참조

□ 직접편익

(정성)세분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의무
활동제 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의무
편의항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의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기존 사업주가 이행하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얻게 되는 산업안전 관련 편익을 계량화하기는 어려움

□ 간접편익

(정량)세분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의무
활동제 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의무
편의항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의무
비용	244,337,054,551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X 1/1.665 X 0.218 * 2019년도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당 평균 산재보상금액 (17,496천원) X 보호구 지급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수 (111,573명)로 산출 (1952081208000*0.6*0.218)
근거설명	○ 비용 추산을 위한 기본전제 • 2019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당 평균 산재 보험급여 지급액 (17,496천원) ※ '20. 7월 적용 확대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여제 품점검원, 가전제 품점검원, 화물차주 등)는 유사 직종의 1인당 단가 적용